

「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·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 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11.23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11. 15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1. 15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7호)
- 다. 2004. 11. 23 :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 (지역경제과장 유재석)

가. 제안이유

-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을 정비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 주요내용

-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의 명확화
 - 적당한 배수설비 설치 ⇒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9의2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
- 농공단지 공동 오·폐수종말처리장별로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승인된 기본계획에 맞게 정비
 - 사남 농공단지 및 신규지정농공단지
 - BOD :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
 - COD : 화학적 산소요구량
 - SS : 부유물질
 - T-N : 총 질소
 - T-P : 총인
 - 송포 농공단지
 - BOD :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

- COD : 화학적 산소요구량
- SS : 부유물질

다. 근거법령

- 수질환경보전법 및 같은법시행령, 같은법시행규칙
- 환경개선비용부담법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영태)

- 동 조례 (안)은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을 정비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 -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적용에 있어 조례 제8조(배수설비의 설치)의 「적당한 배수설비 설치」를 「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(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)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(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) 별표 9의2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」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
 - 사남 농공단지과 송포 농공단지에 있어 당초 지정 시 승인된 기본계획에 맞게 공동 오·폐수종말처리장별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토록하고
 -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경우 이의회복 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
-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체계, 상위법령과의 관계, 용어 및 조문의 정리,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	답 변	
질의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박종권 위원	○ 송포 농공단지의 경우 T-N(총질소), T-P(총인)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는지?	지역경제과장 유재석	○ 당초 기본계획 승인 시 처리 대상오염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조례상에는 없으나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되고 있음 ○ 조례상의 허용기준치를 처리하려면 현재시설을 대폭 보강하여야 처리할 수 있어 입주기업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점차 오·폐수 처리시설을 보강해 나갈 것임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: 없음